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□ 제정 : 2018. 8. 31.

□ 개정 : 2020. 3. 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.)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 설치하는 기금운용 심의회 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: 2020.3.13.>

② 심의회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심의회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심의회 위원 중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소정의 회계 또는 재무관련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직자의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회의)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4조(심의사항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3. 그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의결)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심의회는 학교 교직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한다.

제7조(기타) ①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사립학교법

4-3-14 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준수한다.

②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